

2015학년도 전형계획(안)

1. 모집시기별 전형유형 및 전형방법

시기	유형	구 분		인원	전형방법(비율)	수능최저학력기준	비고
수시모집	실기	재외국민	전체	38	(일괄) 강의테스트 + 면접	없음	
		특별전형*	의학과	1	(1단계) 강의테스트 100 (2단계) 강의테스트 + 면접		
	학생부(종합)	아주ACE전형(일반) (입학사정관전형)		219	(1단계)서류 100 (2단계)1단계 50 + 면접 50	없음	1단계 3배수
		아주ACE전형(고른기회) (입학사정관전형)		59			
		과학교육우수인재전형		48	(1단계)서류 100 (2단계)1단계 50 + 면접 50	없음	1단계 4배수
		특수교육대상자특별전형 (입학사정관전형)		10	(1단계)서류 100 (2단계)1단계 50 + 면접 50	없음	1단계 3배수
	학생부(교과)	학교생활우수자전형 (입학사정관전형)		189	(일괄) 학생부 교과 80 + 비교과 20	자연계열: 국어A, 수학B, 영어, 탐구(과탐) 중 2개영역 등급합 7 이내(단, 수학B과 목 3등급 이내 필수) 인문계열: 국어B, 수학A, 영어, 탐구(사탐) 중 2개영역 등급합 6 이내(단, 영어과 목 3등급 이내 필수)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수학B, 영어 2개영역 등 급합 5 이내	
		일반전형1 (논술)	전체	446	(일괄) 논술 40 + 학생부(교과) 60	자연계열: 국어A, 수학B, 영어, 탐구(과탐) 중 2개영역 등급합 7 이내(단, 수학B과 목 3등급 이내 필수) 인문계열: 국어B, 수학A, 영어, 탐구(사탐) 중 2개영역 등급합 6 이내(단, 영어과 목 3등급 이내 필수) 소프트웨어융합학과 / 금융공학과: 수학B, 영어 2개영역 등급합 5 이내	1 등급
			의학과	8			
	실기 위주	외국어특기자전형		13	(1단계)외국어성적 100 (2단계)1단계 70 + 면접 30	없음	1단계 6배수
실기 위주	체육우수인재전형(축구)		12	(일괄) 실적 20 + 실기 30 + 면접 50	없음		
정시 가군	수 능	일반전형2		491	(일괄) 수능 100	없음	
		일반전형3(교차)		32	(일괄) 수능 100	없음	
정시 나군		일반전형4		119	(일괄) 수능 100	없음	
정시 다군		일반전형5		287	(일괄) 수능 100	없음	
		일반전형6(교차)		10	(일괄) 수능 100	없음	
정시 정원 외		농어촌학생특별전형		65	(일괄) 수능 100	없음	
		특성화고졸업자특별전형		20	(일괄) 수능 100	없음	
		기회균형선발전형		17	(일괄) 수능 100	없음	
계				2,084			

* 정원외 특별전형: 재외국민특별전형, 특수교육대상자특별전형, 농어촌학생특별전형, 특성화고졸업자특별전형, 기회균형선발전형

* 재외국민특별전형 전형방법은 2014년 4월 확정하여 공지할 예정임

2. 수시 모집 학생부 반영방법

가. 반영교과 및 반영비율

구 분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반영과목수
자연계열 금융공학과	20%	30%	30%	-	20%	반영교과 이수 전과목
인문계열	30%	20%	30%	20%	-	

- * 반영 학년별 해당 교과 이수과목이 전혀 없는 경우 해당 교과 성적을 0점으로 처리함
- * 계열은 본교 모집단위의 계열을 의미하며, 해당 계열의 반영비율을 적용함
- * 유사 과목의 경우 별도 심의를 통해 반영할 수 있음

나. 반영점수 : 전형별 학생부 반영비율의 100%(기본점수 없음)

다. 학년별 반영비율 : **1학년 20%, 2~3학년 통합 80%**

※ 수시 모집은 3학년 1학기 성적까지 반영(재수생 이상도 동일). 조기졸업(예정)자는 2학년 1학기 성적까지 반영(재수생 이상도 동일)

라. 학생부 등급점수(10점 만점 기준)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등급점수	10.0	9.9	9.8	9.5	9.0	8.5	7.5	6.5	0.0

마. 반영방법 : 학생부 과목별 등급점수에 이수단위 및 반영비율을 적용하여 산출

바. 대상 전형: 학교생활우수자전형, 일반전형1(논술)

※ 학생부 종합 전형(아주ACE전형(일반, 고른기회), 과학우수인재전형, 특수교육대상자특별전형)에서는 위 반영방법을 적용하지 않고, 서류평가에서 학생부의 교과와 비교과를 정량·정성평가함

3. 수시모집 논술고사

가. 반영비율[기본점수 없음]

전형명	모집단위	반영비율	반영단계
일반전형1(논술)	전체	40%	일괄

나. 논술유형

- 1) 자연계열(의학과 제외): 수리논술
- 2) 자연계열(의학과): 수리논술 + 의학논술
- 3) 인문계열: 통합논술(언어·사회 분야)

※ 단, **금융공학과는 수리논술을 실시함**

다. 시험시간 : 120분

4. 정시모집 수능 반영방법(가군/나군/다군 모집)

가. 수능 반영영역 및 반영비율

- 1) 정시 가군: 일반전형2

가) 일반전형2

구분		국어		수학		영어	탐구	
		A	B	A	B		과탐	사탐
자연계열	산업공학과, 환경공학과, 건축학과, 전자공학과, 컴퓨터공학전공, 소프트웨어융합학과, 미디어콘텐츠전공(자연), 화학과, 생명과학과, 간호학과(자연)	20%			30%	30%	20%	
인문계열 1	경영학과		20%	30%		30%		20%
인문계열 2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불어불문학과, 문화콘텐츠학과, 경제학과, 행정학과, 심리학과,		30%	20%		30%		20%

나) 일반전형3(교차)

구분		국어		수학		영어	탐구	
		A	B	A	B		과탐	사탐
미디어콘텐츠전공(인문), 간호학과(인문)			20%	30%		30%		20%

2) 정시 나군: 일반전형4

구분		국어		수학		영어	탐구	
		A	B	A	B		과탐	사탐
자연계열	화학공학과, 신소재공학과, 응용화학생명공학과, 소프트웨어보안전공	20%			30%	30%	20%	
인문계열	금융공학과		20%	30%		30%		20%

3) 정시 다군

가) 일반전형5

구분		국어		수학		영어	탐구	
		A	B	A	B		과탐	사탐
자연계열 1	기계공학과, 건설시스템공학과, 교통시스템공학과, 전자공학과, 소셜미디어전공(자연), 수학과, 물리학과	15%			35%	35%	15%	
자연계열 2	의학과	15%			25%	35%	25%	
인문계열 1	e-비즈니스학과		15%	35%		35%		15%
인문계열 2	사학과, 사회학과, 정치외교학과		30%	20%		30%		20%

나) 일반전형6(교차)

구분	국어		수학		영어	탐구	
	A	B	A	B		과탐	사탐
소셜미디어전공(인문)		15%	35%		35%		15%

4) 정시 정원외 특별전형

가) 대상전형: 농어촌학생특별전형, 특성화고졸업자특별전형, 기회균형선발전형

나) 수능 반영영역 및 반영비율: 정원외 특별전형으로 선발하는 해당 모집단위의 모집군 수능 반영영역 및 반영비율에 따름

※ 단, 자연계열 학생과 인문계열 학생을 분할 모집하는 학과(미디어학과(미디어콘텐츠전공, 소셜미디어전공), 간호학과)는 해당 학과의 원래 계열인 자연계열 기준으로 모집함(수능 국어A, 수학B, 영어, 과탐을 응시해야 함)

※ 전자공학과는 정시 정원외 특별전형을 다군에서 모집함

다) 특성화고졸업자특별전형에서는 탐구영역을 과탐/사탐/직탐 구분 없이 반영함

나. 수능 성적 활용지표 : 언어·수리·외국어는 **표준점수**, 탐구영역은 **백분위점수**를 반영함

5. 지원 자격

가. 수시: 학생부 종합(아주ACE전형(일반, 고른기회), 과학우수인재전형, 특수교육대상자특별전형), 학생부 교과(학교생활우수자전형, 일반전형1(논술)), 실기 위주(체육우수인재전형(축구))

1-1) 아주 ACE 전형(일반) [학생부 종합]

: 2013년 2월, 2014년 2월 고교졸업자 및 2015년 2월 고교졸업예정자[조기졸업자포함]로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가. 국내 일반고, 자율고, 특수목적고(과학(영재)고, 외국어고, 국제고만 해당), 인가 대안학교 졸업(예정)자[조기졸업(예정)자는 2학년 1학기까지 이수한 자]

나. 초중등교육법(2조, 4장 6절) 및 동법 시행령(4장 5절)에 규정된 특수학교, 각종학교, 외국인학교, 산업체부설고등학교, 예술계열 고등학교, 체육계열 고등학교,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마이스터고), 특성화고(직업형, 체험형, 대안학교형), 일반계고 중 구(舊)종합고의 전문계학과, 비인가 대안학교, 검정고시 출신자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요건 해당자는 지원할 수 없음

1-2) 아주 ACE 전형(고른기회) [학생부 종합]

: 2013년 2월, 2014년 2월 고교졸업자 및 2015년 2월 고교졸업예정자[조기졸업자포함]로서 가 및 나 의 조건을 만족하고 다의 각 항목 중 해당사항이 있는 자

가. 국내 일반고, 자율고, 특수목적고(과학(영재)고, 외국어고, 국제고, 예술고만 해당), 특성화고(구(舊)전문계고), 인가 대안학교 졸업(예정)자[조기졸업(예정)자는 2학년 1학기까지 이수한 자]

나. 초중등교육법(2조, 4장 6절) 및 동법 시행령(4장 5절)에 규정된 특수학교, 각종학교, 외국인학교, 산업체부설고등학교, 체육계열 고등학교,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마이스터고), 비인가 대안학교, 검정고시 출신자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요건 해당자는 지원할 수 없음

다. 세부 지원자격 기준

(1) 국가유공자 자녀: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 제2호의 '국가보훈대상자'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 본인 및 그의 자녀(독립유공자는 손자녀까지 포함)

※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수당지급대상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보훈보상(순직) 군경, 보훈보상(순직) 공무원

※ 교육지원 대상자 본인은 졸업연도에 제한을 두지 않음

(2) 농어촌 또는 도서·벽지 출신자: 아래의 가) 또는 나)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고, 다) 및 라) 항목에 결함이 없는 자

가) **중·고등학교 5년과정 이수자(부·모·지원자)**: 지방자치법 제3조에 정한 읍·면(광역시, 도, 도·농 통합시 관할구역에 두는 읍·면 포함)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에 소재하는 고등학교(1~3학년) 및 중학교(2~3학년)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로서, 중 2~고등학교 재학기간(중2-1학기 개시일 ~ 고등학교 졸업일) 중 본인 및 부모(사망·이혼 및 기타사유에 해당하는 부모는 예외) 모두가 농어촌지역 또는 도서·벽지에서 거주한 자로 출신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나) **중·고등학교 6년과정 이수자(지원자)**: 부모가 농어촌 또는 도서·벽지에 거주하지 않지만 본인이 농어촌 또는 도서·벽지에 거주하면서 해당 지역의 중·고(6년)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출신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다) 적용기준

(1) 2개 이상의 학교에 재학한 경우에는 해당 학교 모두가 읍·면 또는 도서·벽지 소재 학교이어야 함

(2) 중·고등학교 재학 중 행정구역 개편으로 시(구·동) 지역으로 편입된 지역은 농어촌 또는 도서·벽지로 간주함[단, 행정구역 개편 후 부·모·본인 중(중·고등학교 6년과정 이수자는 본인만) 1명이라도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기간 중 농어촌 또는 도서·벽지가 아닌 지역으로 1일이라도 거주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3) 부모와 학생의 거주지 또는 거주지와 학교 소재지가 동일한 읍·면 또는 도서·벽지가 아니라도 가능함

라) 지원 불가자

(1) 거주 대상 기간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읍·면 또는 도서·벽지가 아닌 지역에 소재한 학교에서 재학한 자

(2) 읍·면 또는 도서·벽지 소재 특수목적고 중 과학고·외국어고·국제고·예술고·체육고 등에서 재학한 자

(3) 읍·면 또는 도서·벽지지역 마이스터고교 및 특성화고교(또는 일반계고 중 구(舊)종합고의 전문계학과) 출신자(특성화고교졸업자특별전형에만 지원 가능)

- (4) 거주 대상 기간 중 부·모·본인(중·고 6년 전 과정 이수자의 경우에는 본인만) 중 일부가 농어촌 또는 도서·벽지지역이 아닌 곳에 1일이라도 거주지를 옮긴 기록이 있는 경우
- (5) 검정고시 합격자 및 신활력지역 출신자
- (6) 2015년 2월 졸업예정자(현재 고3)가 아닌 자

2016학년도부터 지원자의 중·고등학교 재학 전 기간(총 6년 연속) 동안, 지원자와 부모 모두 지방자치법 제3조에 정한 읍·면(광역시, 도, 도·농 통합시 관할구역에 두는 읍·면 포함)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하고, 지원자는 해당 소재지의 중·고등학교에 재학해야 하는 것으로 자격 강화 예정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지침]

- (3) 특성화고교 출신자: 아래의 가) ~ 라)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자
 - 가) 특성화(구(舊)전문계)고등학교(또는 일반계고 중 구(舊)종합고의 전문계학과)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인문계 고교에서 중도에 전학한 경우 지원 자격 없음)
 - ※ 단,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시작되는 당해연도 3월 31일 이내에 특성화(구(舊)전문계)고등학교(또는 일반계고 중 구(舊)종합고의 전문계학과)에 전입한 자는 인정함
 - ※ 대교협 지침에 따라 2015학년도부터 마이스터고등학교 출신자는 특성화고교졸업자를 선발하는 전형에 지원할 수 없음
 - 나) 본교의 모집단위별로 지정한 동일계열의 고교 기준학과 출신자 또는 모집단위별로 지정한 동일계열의 전문교과 30단위 이상 이수자
 - ※ 모집단위 동일계열 고교 기준학과 목록

모집 단위	계열	고교 기준학과
공과 대학	공업계열	기계과, 전자기계과, 금속재료과, 전기과, 전자과, 통신과, 컴퓨터응용과, 토목과, 건축과, 디자인과, 화학공업과, 환경공업과, 세라믹과, 식품공업과, 섬유과, 인쇄과, 자동차과, 조선과, 항공과
정보 통신 대학	공업계열	전기과, 전자과, 통신과, 컴퓨터응용과, 컴퓨터게임과, 만화·애니메이션과, 영상제작과, 인쇄과, 자동차과, 조선과, 항공과
경영 학과	상업·정보 계열	경영정보과, 회계정보과, 무역정보과, 유통정보과, 정보처리과, 콘텐츠개발과, 전자상거래과, 상업디자인과, 관광경영과, 금융정보과

- 다) 검정고시 출신자 및 대안교육 특성화고등학교(자연현장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 출신자는 지원할 수 없음
 - 라) 특성화고교 출신자는 아주ACE전형(고른기회)의 모집인원이 있는 모집단위 중 공과대학, 정보통신대학, 경영학과만 지원할 수 있음
- (4) 기회균형 선발 대상자: 기초생활수급권자 또는 차상위 복지급여 수급자로서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또는 우선돌봄 차상위가구

- ※ 차상위계층: 차상위 본인부담금 경감, 자활급여,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차상위 부가급여, 한부모 가정 지원사업 해당 가구
- ※ 차상위 복지급여 비수급자는 지원할 수 없음(단, 우선돌봄 차상위가구는 지원 가능)
- ※ 우선돌봄 차상위가구: 가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비수급 계층
- ※ 지원자가 속한 세대의 구성원 중 한 명이 차상위계층 대상자인 경우 인정(차상위계층 대상자가 주민등록등본상 지원자와 현재 함께 거주하거나, 차상위계층 지정 당시 차상위계층 대상자가 주민등록등본상 지원자와 함께 거주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함)

2) 과학우수인재전형 [학생부 종합]

- : 2013년 2월, 2014년 2월 국내 고교졸업자 및 2015년 2월 국내 고교졸업예정자로서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까지(조기졸업(예정)자는 2학년 1학기까지) 과학 교과 27단위 이상 이수자
- ※ 학교생활기록부 편제상 교과 구분에서 ‘과학’으로 편성된 과목이어야 하며, 별도의 교과 구분 기준을 따라 편성된 과목이거나 교과 구분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 본교의 별도 심의를 거쳐 교과를 구분하여 반영할 수 있음

3) 특수교육대상자특별전형 [학생부 종합]

- : 2013년 2월, 2014년 2월 고교졸업자 및 2015년 2월 고교졸업예정자[조기졸업자 포함] 또는 2012년 1월 1일 이후 검정고시 합격자로서 아래의 기준 중 하나를 만족하는 자
-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하여 장애인 등록을 필한 장애등급 1~3급 해당자
-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등에 의한 상이등급자(국가보훈처 등록)로 되어 있는 자 중에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1~3급 기준에 상응하는 자

4) 학교생활우수자전형 [학생부 교과]

- : 2013년 2월, 2014년 2월 고교졸업자 및 2015년 2월 고교졸업예정자로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가. 국내 일반고, 자율고, 특목고(과학고·외고·국제고만 해당)에서 3학년 1학기까지 전 학기를 모두 이수한 자
- 나. 초중등교육법(2조, 4장 6절) 및 동법 시행령(4장 5절)에 규정된 특수학교, 각종학교, 외국인학교, 대안학교, 산업체부설고등학교, 예술계열 고등학교, 체육계열 고등학교,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마이스터고), 특성화고(직업형, 체험형, 대안학교형), 대안학교, 종합고의 전문계학과, 방송통신고등학교 출신자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요건 해당자는 지원할 수 없음

5) 일반전형1(논술) [학생부 교과]

- : 2013년 2월, 2014년 2월 고교졸업자 및 2015년 2월 고교졸업예정자[조기졸업자 포함] 또는 2012년 1월 1일 이후 검정고시 합격자

6) 외국어특기자전형 [실기 위주]

가. 2013년 2월, 2014년 2월 고교졸업자 및 2015년 2월 고교졸업예정자[조기졸업자 포함] 또는 2012년 1월 1일 이후 검정고시 합격자로서 아래의 모집단위별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자(단, 외국고등학교 출신자는 2012년 6월 ~ 2013년 1월 졸업자도 인정)

나. 모집단위별 자격요건

영어영문학과: 본교가 지정한 영어 공인성적 소지자[2012년 9월 18일 ~ 2014년 8월 9일 기간 중에 응시한 시험성적만 인정]

불어불문학과: 국내외 프랑스어 공인성적(자격증) 소지자 또는 고등학교 재학 중 국내외 프랑스어 관련 전국 규모 대회 수상실적이 있는 자

7) 체육우수인재전형(축구) [실기 위주]

: 축구(남자): 고교 졸업자, 2015년 2월 고교 졸업예정자 및 2012년 1월 1일 이후 검정고시 합격자로서 다음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가. 2012년 ~ 2014년 청소년대표

나. 2012년 ~ 2014년 전국대회 8강 이내 입상자

다. 2013년 ~ 2014년 고교 리그 대회 권역별 리그 순위 4위 이내 입상자 또는 챌린저리그에서 소속팀 출전경기 수 또는 출전경기 시간의 30% 이상 출전한 자(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 단, 위 세가지 조건의 해당 기간 중 경기실적평가에 반영되는 대회(또는 리그)에서 최소한 1개의 대회(또는 리그)의 소속팀 출전경기 수 또는 출전경기 시간의 30% 이상 출전해야 함

※ 각 포지션(FW, MF, DF, GK)별로 0~8명 선발

나. 정시: 일반전형2, 일반전형3(교차), 일반전형4, 일반전형5, 일반전형6(교차), 농어촌학생특별전형, 특성화고교졸업자특별전형, 기회균형선발전형

1) 정시가군 일반전형2 [수능 위주]

: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자로서 아래의 기준 중 하나를 만족하는 자

가. 고등학교 졸업자 및 2015년 2월 졸업예정자

나.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다. 기타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 이상의 학력인정자

※ 해당 전형 모집단위별 수능 반영영역의 성적이 없거나 지정한 유형과 다르게 응시한 경우 불합격처리함(예비순위 부여하지 않음)

2) 정시 나군: 일반전형3(교차) [수능 위주]

: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자로서 아래의 기준 중 하나를 만족하는 자

가. 고등학교 졸업자 및 2015년 2월 졸업예정자

나.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다. 기타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 이상의 학력인정자

※ 해당 전형 모집단위별 수능 반영영역의 성적이 없거나 지정한 유형과 다르게 응시한 경우 불합격처리함(예비순위 부여하지 않음)

3) 정시 나군: 일반전형4 [수능 위주]

: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자로서 아래의 기준 중 하나를 만족하는 자

가. 고등학교 졸업자 및 2015년 2월 졸업예정자

나.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다. 기타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 이상의 학력인정자

※ 해당 전형 모집단위별 수능 반영영역의 성적이 없거나 지정한 유형과 다르게 응시한 경우 불합격처리함(예비순위 부여하지 않음)

4) 정시 다군 일반전형5 [수능 위주]

: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자로서 아래의 기준 중 하나를 만족하는 자

가. 고등학교 졸업자 및 2015년 2월 졸업예정자

나.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다. 기타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 이상의 학력인정자

※ 해당 전형 모집단위별 수능 반영영역의 성적이 없거나 지정한 유형과 다르게 응시한 경우 불합격처리함(예비순위 부여하지 않음)

5) 정시 다군 일반전형6(교차) [수능 위주]

: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자로서 아래의 기준 중 하나를 만족하는 자

가. 고등학교 졸업자 및 2015년 2월 졸업예정자

나.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다. 기타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 이상의 학력인정자

※ 해당 전형 모집단위별 수능 반영영역의 성적이 없거나 지정한 유형과 다르게 응시한 경우 불합격처리함(예비순위 부여하지 않음)

6) 농어촌학생특별전형 [수능 위주]

: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자이며, 2015년 2월 고교졸업예정자로서 아래 가 또는 나 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고, 다 및 라 항목에 결함이 없는 자

가. **중·고등학교 5년과정 이수자(부·모·지원자)**: 지방자치법 제3조에 정한 읍·면(광역시, 도, 도·농 통합시 관할구역에 두는 읍·면 포함)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에 소재하는 고등학교(1~3학년) 및 중학교(2~3학년)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로서, 중2~고등학교 재학기간(중2-1학기 개시일 ~ 고등학교 졸업일) 중 본인 및 부모(사망·이혼 및 기타사유에 해당하는 부모는 예외) 모두가 농어촌지역 또는 도서·벽지에서 거주한 자로 출신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나. **중·고등학교 6년과정 이수자(지원자)**: 부모가 농어촌 또는 도서·벽지에 거주하지 않지만 본인이 농어촌 또는 도서·벽지에 거주하면서 해당 지역의 중·고(6년)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출신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다. 적용기준

- 1) 2개 이상의 학교에 재학한 경우에는 해당 학교 모두가 읍·면 또는 도서·벽지 소재 학교이어야 함
- 2) 중·고등학교 재학 중 행정구역 개편으로 시(구·동) 지역으로 편입된 지역은 농어촌 또는 도서·벽지로 간주함[단, 행정구역 개편 후 부·모·본인 중(중·고등학교 6년과정 이수자는 본인만) 1명이라도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기간 중 농어촌 또는 도서·벽지가 아닌 지역으로 1일이라도 거주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 3) 부모와 학생의 거주지 또는 거주지와 학교 소재지가 동일한 읍·면 또는 도서·벽지가 아니라도 가능함

라. 지원 불가자

- 1) 거주 대상 기간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읍·면 또는 도서·벽지가 아닌 지역에 소재한 학교에서 재학한 자
 - 2) 읍·면 소재 특수목적고 중 과학고·외국어고·국제고·예술고·체육고 등에서 재학한 자
 - 3) 읍·면 또는 도서·벽지지역 마이스터고교 및 특성화고교(또는 일반계고 중 구(舊)종합고의 전문계학과) 출신자
 - 4) 거주 대상 기간 중 부·모·본인(중·고 6년 전 과정 이수자의 경우에는 본인만) 중 일부가 농어촌 또는 도서·벽지지역이 아닌 곳에 1일이라도 거주지를 옮긴 기록이 있는 경우
 - 5) 검정고시 합격자 및 신활력지역 출신자
- ※ 정원외 특별전형으로 선발하는 해당 모집단위의 모집군별 수능 반영영역의 성적이 없거나 지정한 유형과 다르게 응시한 경우 불합격처리함(예비순위 부여하지 않음)
 - ※ 농어촌학생특별전형에서 간호학과는 해당 학과의 원래 계열인 자연계열 기준으로 모집함(수능 국어A, 수학B, 영어, 과탐을 응시해야 함)
 - ※ 농어촌학생특별전형에서 전자공학과는 정시 다군에서 모집함

2016학년도부터 지원자의 중·고등학교 재학 전 기간(총 6년 연속) 동안, 지원자와 부모 모두 지방자치법 제3조에 정한 읍·면(광역시, 도, 도·농 통합시 관할구역에 두는 읍·면 포함)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하고, 지원자는 해당 소재지의 중·고등학교에 재학해야 하는 것으로 자격 강화 예정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지침]

7) 특성화고교졸업자특별전형 [수능 위주]

: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자로서 아래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자

- 가. 특성화(구(舊)전문계)고등학교(또는 일반계고 중 구(舊)종합고의 전문계학과)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인문계 고교에서 중도에 전학한 경우 지원 자격 없음)

- ※ 단,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시작되는 당해연도 3월 31일 이내에 특성화(구(舊)전문계)고등학교(또는 일반계고 중 구(舊)종합고의 전문계학과)에 전입한 자는 인정함
- ※ 대교협 지침에 따라 2015학년도부터 마이스터고등학교 출신자는 특성화고교졸업자특별전형에 지원할 수 없음

나. 본교의 모집단위별로 지정한 동일계열의 고교 기준학과 출신자 또는 모집단위별로 지정한 동일계열의 전문교과 30단위 이상 이수자

- ※ 모집단위 동일계열 고교 기준학과 목록

모집 단위	계열	고교 기준학과
공과 대학	공업계열	기계과, 전자기계과, 금속재료과, 전기과, 전자과, 통신과, 컴퓨터응용과, 토목과, 건축과, 디자인과, 화학공업과, 환경공업과, 세라믹과, 식품공업과, 섬유과, 인쇄과, 자동차과, 조선과, 항공과
정보 통신 대학	공업계열	전기과, 전자과, 통신과, 컴퓨터응용과, 컴퓨터게임과, 만화·애니메이션과, 영상제작과, 인쇄과, 자동차과, 조선과, 항공과
경영 학과	상업·정보 계열	경영정보과, 회계정보과, 무역정보과, 유통정보과, 정보처리과, 콘텐츠개발과, 전자상거래과, 상업디자인과, 관광경영과, 금융정보과

다. 검정고시 출신자 및 대안교육 특성화고등학교(자연현장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 출신자는 지원할 수 없음

- ※ 정원의 특별전형으로 선발하는 해당 모집단위의 모집군별 수능 반영영역의 성적이 없거나 지정한 유형과 다르게 응시한 경우 불합격처리함(예비순위 부여하지 않음)
- ※ 특성화고교졸업자특별전형에서 미디어학과(미디어콘텐츠전공, 소셜미디어전공)는 해당 학과의 원래 계열인 자연계열 기준으로 모집함(수능 국어A, 수학B, 영어, 탐구(과탐/사탐/직탐 모두 인정)를 응시해야 함)
- ※ 특성화고교졸업자특별전형에서 전자공학과는 정시 다군에서 모집함

8) 기회균형선발전형 [수능 위주]

: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자로서 아래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자

가.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나. 기초생활수급권자 또는 차상위 복지급여 수급자로서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또는 우선돌봄 차상위가구

- ※ 차상위계층: 차상위 본인부담금 경감, 자활급여,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차상위 부가급여, 한부모 가정 지원사업 해당 가구

- ※ 차상위 복지급여 비수급자는 지원할 수 없음(단, 우선돌봄 차상위가구는 지원 가능)

- ※ 우선돌봄 차상위가구: 가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비수급 계층

- ※ 지원자가 속한 세대의 구성원 중 한 명이 차상위계층 대상자인 경우 인정(차상위계층 대상자가 주민등록등본상 지원자와 현재 함께 거주하거나, 차상위계층 지정 당시 차상위계층 대상자가 주민등록등본상 지원자와 함께 거주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함)

- ※ 정원외 특별전형으로 선발하는 해당 모집단위의 모집군별 수능 반영영역의 성적이 없거나 지정한 유형과 다르게 응시한 경우 불합격처리함(예비순위 부여하지 않음)
- ※ 기회균형선발전형에서 미디어학과(미디어콘텐츠전공, 소셜미디어전공)는 해당 학과의 원래 계열인 자연계열 기준으로 모집함(수능 국어A, 수학B, 영어, 과탐을 응시해야 함)
- ※ 기회균형선발전형에서 전자공학과는 정시 다군에서 모집함

6. 위 사항 이외의 세부내용은 2014학년도 전형 기준을 적용함